
표준약관 개정 주요내용

1. 개정 사유

- 휴면예금 관련 대법원 판결* 내용에 따라 '14년 표준약관 및 표준 규정에서 휴면예금 출연 관련 근거 삭제** 되어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이 불가

*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은행의 이자지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(대법원2010두12996판결)

** 거래중지계좌로의 편입조항, 요구불예금의 잠좌편입 및 잡이익 처리 조항

※ 정부당국 요청으로 은행 권은 은행연합회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('16.10.7)하여 휴면예금출연근거 마련

- 또한 휴면예금 출연을 위해서는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이자지급을 유예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시켜야 하나 현행 약관상 근거가 불명확

2. 개정 내용

- (예금거래기본약관) 장기 무거래계좌 예금의 소멸시효 완성 및 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원리금(휴면예금)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 조항 신설

-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요구불예금, 만기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거치식·적립식 예금의 소멸시효 완성

- (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), 거래중지계좌의 이자지급 방식에 대한 조항 신설

-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후에는 계좌해지시 또는 고객의 입출금거래 발생일에 일괄계산하여 이자지급을 할 수 있음

3. 개정 시행일 : '17. 9. 27.

표준약관 및 표준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(안)

□ 관련 규정 개정(안)

약관명	현 행	개 정(안)
예금 거래 기본 약관	<신 설>	<p>제9조의2 (휴면예금 및 출연)</p> <p>① 저축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것(이하 '휴면예금'이라 한다)으로 본다.</p> <p>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나.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</p> <p>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40조에 따라 "서민금융진흥원"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할 수 있다.</p>
입출 금이 자유 로운 예금 약관	<p>제3조(거래중지계좌) 상호저축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다만,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상호저축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</p>	<p>제3조(거래중지계좌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또한, 거래중지계좌로의 편입 후에는 계좌해지시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이자를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약관명	현 행	개 정(안)
	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1.~3. <생략>	----- ----- -----